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지적사항 없음		
4. 부속병원 관련		해 당 없 음		
계				

- 붙임 : 1. 학교법인 삼육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삼육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2년 4월 18일

학교법인 삼육학원
 감사인 기호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9465호)
 감사이승희 (인)

※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2년 04월 18일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강순기 (인)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삼육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1 년 03 월 01 일부터 2022 년 02 월 28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지적사항 없음	지적사항 없음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강 순 기 직인 (사인)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별지 제4호 서식]

사학기관 재산상황 및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1. 기본적 사항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예산 유의사항」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2. 공통사항 [재산·회계감사] 법인일반업무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목별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 수입·지출 항목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예산 성립전 예산의 집행 여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유용·횡령 여부 포함) 예산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적정성 여부 예산 전용 절차 및 규정의 준수 여부 예산 총계주의 준수 여부 예금 계좌 구분 관리의 적정성 여부 결산에 미반영된 부외계좌 운용 여부 수입 및 지출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 기금운용 관리 체계 마련 여부 대손상각 등(회수불가능 부실채권 및 고정 자산 폐기)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여부 정기적 재물조사 등 자산관리 적정성 여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 원칙 준수 여부 보수규정의 적정성 및 규정에 따른 인건비, 수당 지급 여부 동일 성격 수당 중복 지급 여부 관련 증빙에 근거한 업무추진비 집행 여부 기채 허가서 상 상환재원 회계에서 상환되는지 여부 기채 자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 여부 기타 중요한 확인사항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예산 유의사항」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및 제9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및 제2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6조 및 제29조, 제33조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0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사학기관 재산상황 및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3. 법인일반업무회계 또는 수익사업회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귀속 선급법인세 및 선급지방소득세 적시 진출 여부 2.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등 지급 여부 3. 차입 시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여부 4.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 제공 시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여부 5. 기본재산 취득 시 이사회 심의·의결 여부 6. 기본재산의 소유권 및 권리확보 여부 7.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절차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관리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계약서 작성, 임대료 산정, 임대보증금 별도 구분 관리 등 8.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기준 충족 여부 -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기준 충족 여부 ※ 수익용기본재산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검토 - 학교운영경비부담률 기준 충족 여부 9. 법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하거나 학교수입을 법인에서 세입처리하는지 여부 10.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도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립학교법」 제26조 • 「사립학교법」 제28조 • 「사립학교법」 제28조 • 「사립학교법」 제16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 •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4. 교비회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잉여금처리원칙 마련 여부 2.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 3. 건축적립금 적립 및 기채원리금 상환의 목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하였는지 여부(건축적립금 진출 한도 준수 여부 포함) 4. 기금 적립 목적의 적정성 여부 5. 등록금선수금 학기 개시 전 집행 여부 6. 등록금 및 수강료 반환규정에 따라 적절히 반환하였는지 여부 7. 입학전형료 미집행 잔액 반환 여부 8.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 9. 교육용기본재산 담보제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교육부에서 안내하는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 「사립학교법」 제32조3 • 「고등교육법」 제11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 「사립학교법」 제32조2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 「사립학교법」 제28조

[별지 제4호 서식](계속)

사학기관 재산상황 및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5. 부속병원회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요불급한 의료장비 구입 후 미 활용 방치 여부 2. 지급근거 없는 진료자문위원수당 지급여부 3.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일반회계를 경유하여 대학으로 전출하는지 여부 4. 부속병원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장비 현황 • 진료자문위원수당 지급 현황 •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 「사립학교법」 제29조

법인 이사회 운영 및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1. 기본적 사항 법인일반업무관련 수익사업 관련 학교업무 관련 부속병원 관련	1.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의 범위 :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 기능)제1항 2. 업무감사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법인과 대학관련 법령·규정 및 해당 법인의 정관, 학칙 등 제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 및 효율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2호 • 매년 통보한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 매년 통보한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2. 공통사항 법인일반업무 관련 수익사업 관련 학교운영 관련 부속병원 관련	1. 내부통제의 취약점 또는 개선점 2. 학교법인 정관에 없는 임의기구 설치 여부 3.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시정 여부 4. 기타 중요한 지적사항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 정관
3. 법인일반업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운영 사항 1.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 준수 여부 2. 이사회 시 제척사유 해당자의 의결참여 여부 3. 이사회 소집목적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안의 의결 여부 4.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시 정족수 충족 여부 5. 이사회 사고 또는 쟁위 시 직무대행 선임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17조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 • 사립학교법 제18조. 제45조. 정관 • 사립학교법 제19조제2항
4. 수익사업 관련	1. 수익사업의 공고 여부 2. 수익사업의 학교교육 저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6조제3항 •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
5. 학교운영 관련	1. 학교장 및 교원 임면 절차의 합법성 여부(공개 채용, 주요일간지등에 공고 등) ※ 교원임면에 관한 간섭이 아니고, 행정절차만 감사대상임 2. 기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 심의안건의 절차 등 합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및 교원임면의 심의·의결권은 이사회 기능(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5호) 이고,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는 내부감사인의 감사대상임(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2호) •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법인 이사회 운영 및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중점 확인사항

감사 분야	감사 확인사항(지적사항 유형)	근거 법령 및 참고사항
1. 공통사항 법인일반업무관련 수익사업 관련 학교운영 관련 부속병원 관련	1. 내부통제의 취약점 또는 개선점 2. 학교법인 정관에 없는 임의기구 설치 여부 3.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시정 여부 4. 기타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및 정관 • 「사립학교법」 제16조
2. 법인일반업무 관련	[이사회 운영 사항] 1.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 준수 여부 2. 이사회 시 제척사유 해당자의 의결참여 여부 3. 이사회 소집목적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안의 의결 여부 4.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시 정족수 충족 여부 5. 이사회 사고 또는 쫓위 시 직무대행 선임 적정 여부	• 「사립학교법」 제17조 • 「사립학교법」 제16조 • 「사립학교법」 제18조 • 「사립학교법」 제19조
3. 수익사업 관련	1. 수익사업의 공고 여부 2.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 반영 여부 3. 수익사업의 학교교육 저해 여부	• 「사립학교법」 제6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4. 학교운영 관련	1. 학교장 및 교원 임면 절차 자체의 합법성 여부(공개채용, 주요일간지등에 공고 등) 2. 기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 심의안건의 절차 등 합법성 여부	•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정관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육학원 (삼육대학교)의 2020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1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 (삼육대학교)의 2021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22 년 04 월 18 일

학교법인 삼육학원

감사 은 기 호 (인)

감사 이 승 희 (인)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법인사무처장

성명 신 종 학 (인)